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규정

다. 검사 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
표 서식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
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규정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승인취소
2.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1) 공사중지 1개월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승인취소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m²			
사업의 내용	자 금 조 달 계 획	내자	합 계	
			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외국 자본	기 타	
			소 계	
			차 관	
			기 타	
사업기간				
사업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	검 토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	결 재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	지정서교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사업 담당부서)

제 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

시행자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귀하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의 목적 :
3. 사업시행지역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6. 시행자 지정조건 :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 적 m ²		
사업의 내용			자금 조달 계획	합 계	
				소 계	
				국 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기 타	
사업기간			외국 자본	소 계	
				차 관	
				기 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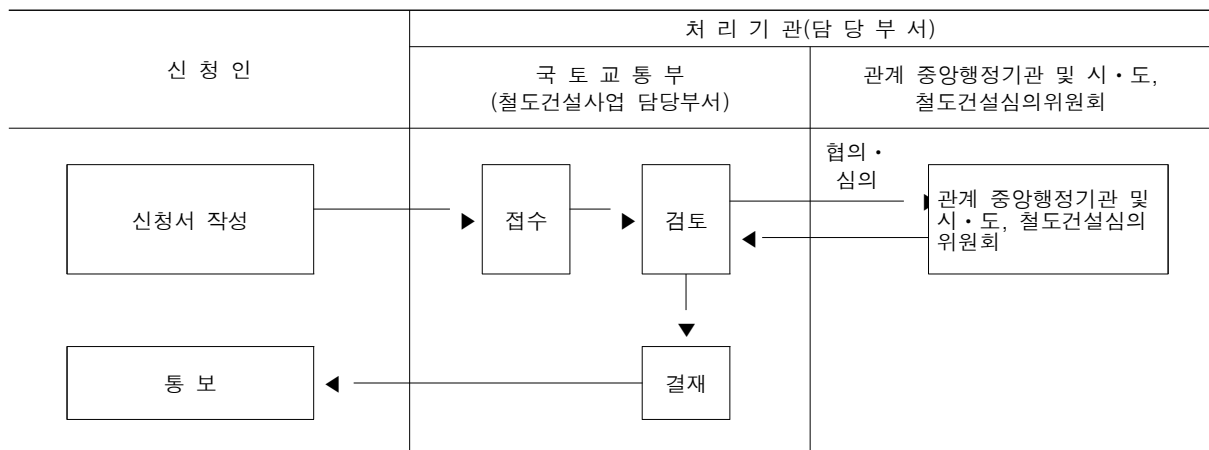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서 1부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검사공무원증 (달빛철도 건설사업)

1. 소속/직급:

3×4cm

2. 성 명:

(모자를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생년월일:

위 사람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1.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80mm×120mm[백상지(150g/㎡)]